

시 민

문서번호	자활지원과-7900	주무관	자활사업팀장	자활지원과장	복지정책관	복지건강실장
결재일자	2014.6.2.	김종숙	<i>이영철</i>	<i>양재연</i>	최흥연	<i>06/02</i> 강종필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	협 조				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

2014년 하반기 시행
희망키움통장(Ⅱ)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

2014. 5.

복지건강실
(자활지원과)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■ (희망키움2 참여자) 무 □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■ (서울광역자활센터) 무 □
	● 전 문 가 : 유 □ () 무 ■
	● 옴 브 즈 만 : 유 □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■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) 무 □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■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□ 취약계층 ■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바른 우리말 ■ 무 □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■ (보건복지부) 무 □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중앙자활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) 무 □
	● 기 업 : 유 □ (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보건복지부) 무 □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서울광역자활센터) 무 □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□ () 무 ■

2014년 하반기 시행

희망키움통장(Ⅱ)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

차상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(Ⅱ)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

I 사업 개요

추진 근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
- 2014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(보건복지부 지침)

추진 경위

- 2010. : 희망키움통장(I) 최초 시행
- 2014. 7. : 희망키움통장(Ⅱ) 시행 및 수행기관 선정

사업 내용

- 목표인원 : 800명 (복지부 예상 수요)
- 지원대상 : 비수급 가구 중 최저생계비 120% 이하, 최근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90% 이상

※ 별첨, 희망키움통장 I·II 사업 비교표 참조

- 지원내용 : 본인저축액(10만원)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:1 매칭
- 지원조건 : 3년간 통장 유지 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
- 추진방법 : 민간수행기관 지정 (서울광역자활센터) - 보건복지부 지침
- 사업 주체별 역할

- ▶ 보건복지부 : 지침, 교육, 모집인원 배분, 언론홍보 등 사업 총괄
- ▶ 서울시 : 민간수행기관과 사업 위탁계약 체결, 예산지원, 구별 모집인원 배분
- ▶ 자치구 : 모집홍보, 신청자 접수, 신청자격여부 검토, 서류심사 및 추천
- ▶ 수행기관 : 최종 가입가구 선정, 장려금 적립 관리, 자격관리, 사례관리 등
- ▶ 모니터링기관(중앙자활센터) : 사업 매뉴얼 교육, 사업 모니터링

소요 예산 : 520백만원 (일반예산 480백만원, 자활기금 40백만원)

II 수행기관 선정

- 사업수행기관 : 서울광역자활센터
- 선정근거 : 보건복지부 지침
 - 사업수행능력과 전국적 조직 및 인력 연계체계를 갖추고 전문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역자활센터 등 지정
 - ※ 타 시도 민간수행기관 지정 현황
: 17개 시도 중 광역자활센터 9개, 자활협회 8개 지정(예정)

《서울광역자활센터 현황》

- 지정·위탁 : 2010.11월
- 종사자 : 9명(센터장 1, 경영기획팀, 사업지원팀)
- 운영예산 : '14년 468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
- 주요사업 : 지역자활사업 지원 및 광역 자활사업 활성화
- 운영법인 : (사)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(협회장: 영등포지역센터장 이수홍)

III 협약 체결

- 당사자 : 서울시장, 서울광역자활센터장
- 사업량 : 800명
- 지원금 : 520백만원
 - 근로소득장려금 : 480백만원 ('14년 일반예산)
 - 민간수행기관 운영비 : 40백만원 (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) - 확보예정
- 사업기간 : '14. 7. 1. ~ '17. 12. 31 (3년 6개월)

< 중앙부처와 시·도 단위 예산편성·집행 절차 >

- (사업비) 보건복지부 ⇒ 시·도 ⇒ 민간수행기관
 - * (재원) 국고보조금과 지방비(시·도비) 매칭(서울 5:5, 지방 8:2)
- (수행기관 운영비) 시·도 ⇒ 민간수행기관
 - * (재원) 시·도 자활기금 활용(1개소당 4천만원 정도)

주요 협약(위탁) 내용

○ 수행기관 : 서울광역자활센터

○ 업무범위

- 가입자 선정 및 참여자 적립금 관리
- 연 2회 이상 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및 재무교육
- 희망키움통장Ⅱ 은행 전산 관리시스템 활용·운영
- 기타 '희망키움통장Ⅱ' 추진관련 사항

○ 근로소득장려금 목적 외 사용금지 (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가능)

○ 사무분담 및 자료 제출 등

협약서(안) : 별첨

IV 향후 계획

민간수행기관 선정결과 제출(→보건복지부) : 2014. 6. 5(목)

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 교육(보건복지부) : 2014. 6.27(금)

기금운용계획 변경(수행기관 운영비) : 2014. 6월중

○ '수행기관 운영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' 건의할 계획임(→보건복지부)

사업비 예산과목 변경(근로소득장려금) : 2014. 6월중

○ 자치단체경상보조금(희망키움통장Ⅱ) → 사회복지보조(사업비)

지원대상 모집 : 1차(7월), 2차(10월)

○ 서류심사(자치구), 대상자 최종 선정(수행기관)

붙임 1. 2014년 희망키움통장(Ⅱ) 수행기관 협약서(안) 1부.

2. 희망키움통장Ⅰ·Ⅱ 사업 비교표 1부. 끝.